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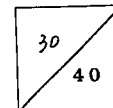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2	1	1994. 1. 6.	중재 김명호

의안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65조

제의취지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에 대한 금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주택미련
저축제도를 도입하고 동 저축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사항>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7조

- ① (생 략)
-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한국은행법 제65조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생 략)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	개	정	비																			
행	(안)	고																				
제1조 ~ 제5조 (생 략) (신 설)	제1조 ~ 제5조 (현 행 과 같 음) 부 칙 <u>이 규정은 1994.1.10 부터 시행한다.</u>	- 시행일자 명시																				
<별 표> <u>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u>	<별 표> <u>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u>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th>분</th><th>이</th><th>율</th></tr> </thead> <tbody> <tr> <td>1.~12.</td><td>(생 략)</td></tr> <tr> <td></td><td>(신 설)</td></tr> <tr> <td>13.~16.</td><td>(생 략)</td></tr> </tbody> </table>	구	분	이	율	1.~12.	(생 략)		(신 설)	13.~16.	(생 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th>분</th><th>이</th><th>율</th></tr> </thead> <tbody> <tr> <td>1.~12.</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13. 장기주택마련 저축</td><td><u>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u> <u>(계약기간은 10년)</u></td></tr> <tr> <td>14.~17.</td><td>(현행과 같음)</td></tr> </tbody> </table>	구	분	이	율	1.~12.	(현행과 같음)	13. 장기주택마련 저축	<u>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u> <u>(계약기간은 10년)</u>	14.~17.	(현행과 같음)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최고율 결정 - 호 제하
구	분	이	율																			
1.~12.	(생 략)																					
	(신 설)																					
13.~16.	(생 략)																					
구	분	이	율																			
1.~12.	(현행과 같음)																					
13. 장기주택마련 저축	<u>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u> <u>(계약기간은 10년)</u>																					
14.~17.	(현행과 같음)																					